

●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27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「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3월 27일

산업통상부장관

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

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등록 또는 신고”를 “등록 또는 신고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2조제1항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2조제3항, 「한국해운조합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등록 및 신고를 적용 배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별도로 정하는 시작일(이하 ‘기준기간 시작일’이라 한다)부터 종료일(이하 ‘기준기간 종료일’이라 한다)까지의”를 “적용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자동차용”을 “자동차용 및 선박용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금액”을 “금액을 원칙”으로 하고, 같은 항의 각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,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,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,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

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보통휘발유, 자동차용 경유, 실내 등유”를 “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, 국내석유제품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◇개정이유

어업인 등의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최고액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, 최근 국제유가 변동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고액 조정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

◇주요내용

- 가.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품목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(안 제3조제1항)
- 나. 최고액 조정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(안 제4조제3항)
- 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함(안 제4조제7항)

<산업통상부 제공>